

## 論文構成・作成에 관한 몇 가지 생각 —특히 법학논문의 구성・작성을 중심으로—

崔 大 權\*

### I.

이 글은 「論文」이라고 하는 형식의 글을 어떻게 구성하여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그 동안의 논문 작성의 경험 및 수많은 논문 심사의 경험에 비추어 다루어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매년 수없이 배출되는 碩士・博士들의 대부분이 논문구성・작성법이라고 할까 자기들의 논문을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문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진술에 관하여 거의 무지하다고 할 정도로 훈련이 안되어 있고 따라서 생각(idea)이 없다는 현실에 자극받아 쓰게 되었다. 필경 이러한 현실은 학부과정은 물론 석・박사과정을 통틀어 논문의 구성・작성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아니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훌륭한 논문 주제를 선택하고 아무리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였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논문으로 구성하여 작성해 내지 못하면 논문다운 논문이 될 수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의 옛 속담이야말로 적절한 논문구성・작성법 구사의 중요성을 가장 잘 지적해 준다고 생각한다. 구슬을 「 꿰」는 형태나 순서나 방법 등이 이를테면 논문구성・작성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슬을 잘못 「 꿰」면 구슬도 결코 보배일 수 없는 것이다.

논문을 잘 구성하고 작성한다는 것은 자기 논문의 논리적 설득력 내지 객관적 합리성을 높여주고 논문을 논문답게 만들어 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따라서 논문구성・작성법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지만 한편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는 도대체 논문이 되지 아니하는 까닭에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곳에서 논문구성・작성법 전반을 완결적으로 전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필자의 생각이나 경험에 비추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지적하여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논문 구성 및 작성의 기본 골격을 짜는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인 만큼 예컨대 註는 어떻게 달며 參考文獻은 어떻게 적시하는가 등의 비교적 기계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적·기술적인 문제는 되도록 다루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어서 이를 다른 소개서나 참고서<sup>1)</sup>를 읽으면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짜여진 논문구성·작성법의 구사는 創意的인 논문일수록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일찍이 전개한 바가 없는 주장을 편다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주장을 편다든지 혹은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 논문을 읽는 사람이 자기가 채택하는 주장이나 접근방법을 지지해 주거나 동조해 주도록 아니면 적어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수궁해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설득해 내는 힘 또는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면, 그 주장이나 접근방법의 채택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구성·작성법은 바로 이러한 설득력 내지 합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 온 바가 없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새로운 주장을 펴거나 새로운 접근방법을 따른다고 하는 경우에 논문 구성·작성의 방법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주장이나 접근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면 새삼스럽게 논문구성·작성법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구성하고 작성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논문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작성하여야 위에서 이야기하는 설득력이나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뜻이다.

물론 연구계획을 어떻게 짜고 논문은 어떻게 구상하며 어떻게 논문을 써 나갈 것인가에 관한 지침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sup>2)</sup>. 그러나 대체로 그 설명이 너무 초급자 안내용이며 그나마 인문·사회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고 더구나 외국책의 번역이거나 편역인 경우가 많아 반드시 법학논문의 구성·작성에 적합한지 의문이어서 법학논문의 구성·작성 및 석·박사생 논문지도의 다년간의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어 논문구성·작성법을 마련하여 보는

1) 우리 나라의 것으로 임인재, **논문작성법-인문·사회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연세대학교 대학원 편, **論文作成法**, 5판,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연구와 논문: 연구방법과 논문작성법**, 개정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2)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것으로 Joseph Gibaldi,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4th ed.,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95);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4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eyton Hurt, *Bibliography and Footnotes*, 3rd ed., rev. and enlarged by Mary L. Nurt Richmo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2) 전계 임인재, **논문작성법**;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저 이필렬 역,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John W. Crosswell 저 허출 역,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서울: 淸文閣, 1997); 김기홍 편저, **논문작성 이렇게 하라**, 개정증보판, (서울: 성광문화사, 1996) 등.

것이 마땅하리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 II.

論文은 論理的인 틀에 따라 자기의 학문적 主張을 論證하기 위하여 쓰는 글임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논문에 있어서는 글쓰는 目的意識이라든지 主題라든지 展開方法이 뚜렷하며 논리적이어야 한다. Post-modern적인 풀이에 의하면 목적이나 주제가 뚜렷치 아니한 글도 논리적이지 아니한 글도 혹시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논리적이지 아니한 글은 있을 수 있어도 목적의식이나 주제가 없는 글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소설이나 시나 수필의 경우에는 분위기나 주변적인 것을 그림으로써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랑을 그린다고 하는 경우에 직선적으로 사랑을 논하는 소설이나 시라면 아마도 그것은 소설이나 시 축에도 끼지 못하는 소설이나 시가 될 것이다. 수필이라면 그야말로 붓 가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려내는 글이다. 그러나 논문이라는 형식의 글을 쓰는 경우에는 은유나 주변적인 것을 그리거나 감성에 호소함으로써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논문의 경우에는 목적의식, 주제, 그리고 그 전개과정이 분명하고 論理整然하여야 한다. 뚜렷한 자기주장을 논리적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거나 정당화함으로써 설득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논문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학자가 쓰는 글의 형식에 논문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학자가 관찰하였거나 체험하였던 것을 혹은 실험하였던 결과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報告書의 형식도 있다. 그리고 어느 주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골고루 짚어가면서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형식의 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있는 그대로 혹은 본대로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소개하는 학자 자신의 보는 시각이나 해석에 따라 소개하는 수밖에 없다(즉 소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100% 객관적인 소개의 글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가령 우리가 Carl Schmitt나 Max Weber의 학문을 소개한다고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생을 위한 教科書의 집필도 있을 수 있다. 교과서의 집필도 기본적으로는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경우와 유사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망라적으로 그러나 나열식으로 쓰게 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주제를 가르치려는 교육이 그 목표이기 때문이다. 書評(book review)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활동이나 현상을 論評하는 글(comments)도 있다. 또 논문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사물을 관찰하고 혹은 현상을 분석하며 혹은 새로운 저술이나 판례를 접하면서 행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여 쓰는 note라고 하는 형식의 글

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글도 자기가 행하는 학문적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자기의 학문적 주장이 배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행하는 학문적 활동의 성과 또는 결과를 간접적으로나 스쳐가듯이 (tangential) 비스듬하게 보여줄 뿐인 데 비해, 자기가 행하는 학문적 활동의 성과 또는 결과를 본격적·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글은 論文의 형식을 빌린다고 할 수 있다. 즉 논문은 학자 자신의 학문적 활동의 성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논문은 자기의 학문적 활동의 결과로 얻은 (또는 얻으려는) 결론적 주장을 객관적·논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증명하고 혹은 정당화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문에 있어서 자기가 행하는 주장은 분명하여야 하고 그 논증과정은 학문적 또는 과학적으로 엄밀하여야 한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논문에 있어서는 특히 목적의식, 주제, 전개 방법 등이 우선 뚜렷하여야 한다.

논문을 씀에 있어서 목적의식, 주제, 전개방법이 뚜렷하려면 첫째로 소위 問題意識이 뚜렷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논문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는지의 생각이 뚜렷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하필이면 왜 이 문제를 붙잡게 되었는지의 연유랄까 어떠한 동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막연히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의 법적 성격 또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알고 싶어서 이 책 저 논문을 섭렵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꽤 널리 퍼져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헌법의 조화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는 법의 체계적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견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두 조항을 조화적·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의문이 곧 이어 제기되어 그리하여 이 의문을 풀어 보려고 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의문의 제기가 이를테면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논문을 시작한다는 점은 해석법학적인 접근에 의한 법학논문의 경우이든 법사회학논문의 경우이든 사정은 동일하다.

사실 논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논문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기 위한 探索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식은 이를테면 학문적인 爭點(issue)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 분야에서 적절한 문제의식에 따라 學問的으로 의미있는 쟁점을 찾아내며 혹은 제기할 줄 아는 能力이야말로 학자로서의 자질이며, 따라서 자기 학문분야에서 적절한 문제의식에 따라 학문적인 쟁점을 찾아내고 혹은 제기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내는 훈련이야말로 실은 학자로서의 훈련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Newton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남들은 무심히 넘기는 현상을 무심히 넘기지 아니하고 “사과는 나무에서 왜 떨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줄 알았던 능력이야말로 이러한 능력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자의 자질은 법학적인 문제의식에 따라 법학적인 쟁점을 제기할 줄 아는 능력에 지나지 아니한다. 법사회학의 경우에는 법사회학적인 문제의식에 따라 법사회학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혹은 제기할 줄 아는 능력에 불과하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이 학문적으로 의미있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학문적으로 의미있는 쟁점을 제기할 줄도 모르는 것이며 따라서 학문적으로 의미있는 논문다운 논문을 쓸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만큼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둘째로는 爭點이 뚜렷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처럼 문제의식과 쟁점은 생성과정상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실은 동일한 것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령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예컨대 동일한 남북관계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제기하는 쟁점이 다르면 서로 다른 논문이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리고 쟁점은 이론적 주장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이론적 주장에 이르는 방법론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은 법적으로 국가일 수가 없다”는 이론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도 있고, 결론은 동일하나(즉 법적으로 북한은 국가이다 또는 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은 동일하나) 그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 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논문은 제기하는 쟁점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쟁점이 제기되면 세 번째로는 이 쟁점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主張(theme)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즉 논문을 쓰기 위하여는 제기된 쟁점에 대한 자기의 해답이랄까 자기의 주장이 뚜렷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기된 쟁점에 대한 자기의 주장은 단 한 줄이나 공식이나 도표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예컨대 “북한은 법적으로 국가가 아니다.”<sup>3)</sup>  $y = f(x) + a4$  혹은 표15), 단 한 쪽이나 두세 쪽으로도 요약할 수 있어야 하며(논문요약), 논문분량으로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논문분량으로 자기의 주장을 전개하였을 때에 자기의

	모 남	원만함
무원칙		x
원칙	x	

- 표3 -

주장은 논리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결론 장에 나타나게 된다. 결국 논문은 서론장에서 문제(즉 쟁점)를 제기하고, 2장, 3장...등 본론 장에서는 자기가 행하려는 주장을 증명하거나 지지하거나 정당화하는 논증을 전개하고, 이러한 논증의 결과 도달하게 된 주장(즉 결론)을 결론장에서 전개하는 틀을 갖추게 된다. 즉 問

3) 崔大權, 事例中心 憲法學 (서울: 博英社, 1997), 384면 이하(제12장 韓國憲法の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참조.  
 4) 崔대권, “법사회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학문인가,” 崔대권 외 10인, 法社會학의 이론과 방법 (서울: 일신사, 1995), 9면 이하 참조.  
 5) 崔대권, “원칙의 사람과 원만한 사람,” 현상과 인식, 1997년 봄호, 129면.

題를 提起하고 論證하고 그리고 結論을 導出하는 과정을 밝게 되는 것이다.

서론장의 문제(즉 쟁점)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으로부터 문제(즉 쟁점)에 이르는 과정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문제(즉 쟁점)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적인 주장과 그 증명(접근) 방법을 假說的으로 던져주게 되는 과정을 밝는다. 이 과정에서 자기의 문제의식이, 주장이, 그리고 접근방법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같이 문제(즉 쟁점)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과정은 논문의 범위를 한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서론장에서는 논문의 目的·範圍·接近方法 등의 틀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론장의 논문의 目的·범위·접근방법 등은 단순한 의례적인 요식행위나 형식이 아니라 문제(즉 쟁점)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 요구되는 틀이다. 요컨대 서론장은 문제(즉 쟁점)의 제기가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제3장...등 본문장에서는 문제(즉 쟁점)를 제기함과 동시에 내 놓은 가설적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차례로 전개하면 된다. 가령 법학논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예컨대 “북한은 법적으로 국가가 아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전개하면 된다. 법사회학논문이라면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거나 증명하는 사실적 자료나 논증자료를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네 번째로 중요한 점은 자기의 주장을 論證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논증에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 그리고 논증을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논증의 방법, 방향, 차례, 범위 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논증의 방법, 방향, 차례, 범위 등이 논문의 뼈대 또는 논문의 틀(framework)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증과 논문의 틀의 관계는 논문의 틀(또는 뼈대)을 잘 짜고 그리고 이 틀대로 논문을 쓰면 논증이 이루어진다는 관계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논증이 대단히 논리적 또는 과학적인 작업인 만큼 논문의 틀을 짜(구성)서 그 틀대로 논문을 작성하는 작업이 대단히 論理的 또는 과학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적 또는 과학적 작업은 논문의 차례를 짜는 과정에도 나타나야 한다. 위에서 자기의 주장을 단 한 줄로도, 수학적인 공식으로도 또는 도표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지적은 서론에 이어 본론의 차례를 짜는 단계에서도 타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뒤와 좌우를 논리적으로 이가 맞게 논리적으로 틀을 짜는 작업은 각 章의 순서와 각 장 밑에 각 節을 짜고 각 절 밑의 각 項을 짜는 작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논문의 틀을 짜는 작업이 대단히 논리적인 작업이라고 하였거니와 다음으로 부딪치는 어려운 일은 이 틀에 맞추어 실제로 논문을 쓰는 일이다. 특히 처음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부딪치는 어려움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잔 논문의 틀에 따라 資料(raw materials)를 모으고 수집한 자료를 논문의 틀에 맞게 분석하고 혹은 소화하여 글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수집한 자료에 맞추어 틀을 짜고 혹은 틀은 잘 짰다고 할지라도 애써 수집한 자료가 아까워서 그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틀대로 논문이 되지 않았다든지 하여 논문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논리적으로 논문의 틀(framework)을 짜는 일(구성)과 이 틀에 맞추어 자료를 꿰어 맞춘다고 할까 동원한다고 할까 틀에 맞게 글을 쓰는 작업(즉 논증하는 작업)이 이론적으로보다는 실체가 대단히 어려운, 그리하여 대단히 절제(discipline)가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논문을 쓰는 작업에는 節制의 美學이 요구된다고 하는 표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표현하고 있다. 도대체 애써 모은 자료를 버리고 싶지 않다든지 그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정은 논리적 작업을 요구하는 논문 구성·작성 작업에서는 금물이다.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논증해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논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먼저 논문의 틀을 짜고 이 틀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논문을 쓰게(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논문작성의 실제로는 처음에 구성한 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증명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주 생각이 바뀌어 틀을 다시 짜거나 수정하고 이러한 새 틀에 따라 자료를 더 보완(예를 들어 새 틀에 맞는 새 자료를 구하는 등의 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밟게 된다. 그러므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논문의 틀을 다시 짜거나 수정·보완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찾아 헤매고 이러한 새 자료에 비추어 틀을 다시 짜는 일 등을 반복하는 일은 오히려 정상에 가까운 작업패턴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완성한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작업의 실체는 결론을 먼저 쓰고 이 결론에 맞게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논리과정을 전개하는 본론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본론에 이어 도달한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문제(즉 쟁점)의 제기를 행하는 서론 장을 쓰는 오히려 逆順의 作業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 이러한 역순이 논문 쓰는 작업의 실제라는 사실의 인식도 논문의 구성·작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요컨대 중요한 점은 논문의 틀을 논리적으로 튼튼하게 잘 짜고 그리고 이 틀에 맞는 자료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논문을 작성·완성하는 일이다.

아무튼 논문을 구성하고 작성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논리적인 작업은 말할 것도 없이 감성이나 미적 교감에 호소하는 설득력이 아니라 論理的 또는 科學的 思惟에 基礎를 두는 說得力을 提高하기 위한 것이다. 즉 논문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또는 과학적인 작업은 논리적 또는 과학적 合理性의 擔保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설득력 또는 과학적 합리성은 전공분야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이론의 전개로는 불충분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우리 주변에서는 전공을 같이하는 사람 사이에서나 통용되는 주장이나 이론을 전개하고 그리고 전공을 같이하는 사람이 그 논문을 심사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과연 그 논문이 객관적인 설득력 또는 합리성을 가지는 논문인지의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채 논문을 통과시키는 경향이 없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좁은 의미의 전공을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삼지 아니한 것을 그 전공을 같이하지 아니한 사람이 논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다. 이러한 경향 내지 태도는 법학이나 사회과학에서와 같이 論理的 說得力 내지 客觀的 合理性을 생명으로 하는 학문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향 내지 태도이다. 법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설득력 내지 객관적 합리성은 “머리는 대단히 좋으나 논문이 취급한 그 전공분야에 아직 들어가지 아니한 대학교 일학년생들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나 정도의 것”<sup>6)</sup>이어야 한다. 논문은 바로 이러한 설득력이나 합리성을 지니도록 구성하고 그렇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는 서론 장으로부터 본론 장을 거쳐 결론 장에 이르기까지의 완성된 논문구성의 전과정에 걸쳐서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자기가 가지는 問題意識 — 제기하는 爭點 — 행하는 主張 — 주장의 論證이 자기 論文의 中心軸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론으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문제의식 — 쟁점 — 주장 — 논증이 자기가 쓰는 논문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지 아니하면 “논문에 초점(focus)이 없다”거나 “초점이 뚜렷치 아니하다”거나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評을 듣거나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평이나 비판은 “이것은 논문이 못된다”는 평이나 비판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문에서 행하는 모든 논증과정, 즉 연역, 귀납, 비교, 분석, 분류, 종합화, 체계화 등 모든 논증과정은 이러한 중심축과 일정한 논리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논문구성의 이러한 중심축으로부터 벗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主題(예컨대 언론의 자유)를 선정하고 이 주제에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문제(예컨대 법적 성격,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언론자유와 주체,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공적 책임, 취재원비익권, 언론자유와 제한과 한계 등)를 나열적으로 모두 다 다루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가르치려는 교과서를 쓰는 태도이지 결코 논문을 쓰는 태도는 아니다. 이러한 태도로 언론의 자유를 다루는 글에는 도대체 초점(일관된 문제의식·쟁점·주장)이 있을 수 없다. 실제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따라서 가장 많이 목격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잘못이다.

일관된 초점이 결여된 글로 이와 유사하나 약간 다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6) 이것은 Ph.D. 학위논문 집필 당시의 필자의 지도교수 가운데 한 분이 행한 비유이다.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연구”의 제목 하에 소위 서론 장에 이어 제2장에서 미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제3장에서는 독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제4장에서는 프랑스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제5장에서는 일본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그 나름대로 다룬 다음에 소위 결론의 장에서 한국의 위헌법률제도를 다루는 예가 그것이다. 우선 각 장에서 각 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완결적으로 다룬 후에 결론의 장에서 다룬 그 나름대로 완결적인 한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논의는 결코 결론으로도 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결코 비교연구일 수도 없다. 이러한 글도 교과서를, 그것도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비교제도적 교과서를 쓴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비교는 잣대가 같아야 비교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위헌법률심사기관이든지, 위헌법률심사기관의 권한이든지, 위헌법률심사기관의 구성원이든지 그 밖의 한 가지나 몇 가지의 동일한 초점을 가지고 비교하여야 비교연구가 되어 이로부터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장에서 미국의, 제3장에서 독일의, 제4장에서 프랑스의, 제5장에서 일본의, 그리고 제6장에서 한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다루어서는 결론적으로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비교적 유형론이 가능할 뿐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어느 무엇의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위하여 비교연구를 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이르테면 같고 혹은 다르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 등)를 고려치 아니하고 단순한 비교연구를 행한 후에 우리 나라 제도의 어느 무엇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그 외국의 제도나 판례 학설 이론 등을 거론하는 글들을 논문의 이름으로 너무나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목격한다. 예컨대 단순히 독일이 또는 미국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주장이나 결론은 나올 수 없다. 독일의, 또는 미국의 그것이 (가령 독일의, 또는 미국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러한 근거나 이유를 들어 독일의, 또는 미국의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논문의 초점을 흐리는 또 하나의 유형으로 자주 접하는 것은 쟁점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쟁점과 관련하여 자기의 주장을 도출해 내는 논리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 그러나 자기에게는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를 다룸으로써 본론으로부터 벗어나 논의를 전개하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유형(소위 distraction의 유형)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의 학설·이론을 중심으로 사상의 흐름을 살핀다고 하는 연구에 있어서 그 학자의 가정배경 등 傳記적인 기술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본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논의인 것이다. 가령 그 특정의 학자가 왜 그러한 사상, 학설 또는 이론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는가를 살피는 논문이

라면 시대적 사회적 요청이라는 변수 이외에 가정배경 등을 살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관료제·법전문직·법발전·법창조의 틀을 가지고 법학교육을 논하는 논문에서 근대성(modernity)의 논의에 집착하여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distraction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근대성은 그 자체로서도 한 편의 논문을 요구할 만한 주제인데 이것이 주 쟁점이 아닌 이상 이것에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논문의 구성과 작성에는 절제의 미학이 요구된다는 표어가 바로 이러한 때에 타당한 것이다.

초점이 흐리다고 할까 그 초점을 하나로 맞추지 못하여 저지르는 유형의 잘못은 법사회학논문의 경우에 자주 일어난다. 그것은 법사회학이 법규범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그러하다. 법사회학적인 접근은 법규범현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사실로서의 법규범현상(예를 들면 사영화나 민영화의 실태보고 또는 그러한 실태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법학도 전공한 논문작성가로서는 실태를 지배하여야 할 정의의 원칙등 당위로서의 법규범의 문제가 그의 머리에 떠올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위적인 규범적 쟁점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논문에서 사회학적인 쟁점과 법학적인 질문을 함께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서는 법사회학논문도 법(경제법)학 논문도 되지 아니한다. 법사회학 논문에서는 그 현상을 지배하여야 할 입법원리나 해석원리 등의 당위적인 법원리·원칙·규칙의 문제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 법사회학논문에서는 정의의 원리등 법원리·원칙에 어긋나든 합당하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영화 내지 민영화 현실의 인식 및 분석 등에 그 초점을 한정시켜야 하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는 문제의식 — 제기하는 쟁점 — 행하는 주장 — 이 주장에 대한 논증이 자기가 쓰는 논문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관련하여, 자기의 문제의식 — 쟁점 — 주장 — 논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주장을 저명한 외국학자의 입을 빌려 전개하는 논문구성·작성의 태도를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감 결여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자기의 주장이 없는 논문은 논문이라 할 수 없다. 자기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저명한 외국학자의 주장을 소개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은 자기의 논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펴는 외국 학자의 학설·이론을 소개하는 논문에 불과하다. 즉 손님은 있으되 주인이 없는 논문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문제의 내외국 학자의 학설·이론을 충실히 소개할 뿐이라는 것이 문제이고 내외국 학자의 학설·이론 등을 소개함에 있어서 표현까지 따 왔다면 인용부호(“ ”)까지 붙이고 표현까지 따오지 아니하였다면 출처를 충실히 밝히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경우와 상황이 정반대인 경우로 남의 글이나 생각을 註 등의 형식으로 출처도 밝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글이나 생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剽竊<sup>7)</sup>이 되는 경우이다. 표절은 논문이 아니라 창작물의 절도에 불과하다. 논문을 쓰는 학자의 세계는 물론 창작활동의 세계에서는 표절이란 저작권침해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학자나 예술가로서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원래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남의 글이나 생각을 따온다거나 이용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은 인용한 글이나 생각의 저자에게 힘입었음을 인정(acknowledgment)하여 주는 행위로서 학자로서의 예의와 직업윤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물론 인용이나 註가 전혀 없는 논문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 전적으로 독창적인 논문인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대체로 학자의 세계에서는 나의 글이나 생각이 남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남의 글이나 생각에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는 법이다. 이러한 때에 내가 어느 사람의 글이나 생각에 영향을 받아 내 생각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내 논문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결코 나의 학자로서의 명예나 실력이 실추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내 글이나 생각으로 盜用하는 일이 오히려 나의 학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가 학자로서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또 내가 쓴 논문이 전적으로 남의 글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적절한 인용부호와 출처의 표시로 그것이 표절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의 글이나 생각의 소개의 글은 되어도 나의 논문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 그것이 나의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독창적인 생각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나의 독창적인 생각(문제의식·쟁점·주장 등)이 그 논문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문은 수많은 註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나의 창작품인 나의 논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남의 글이나 생각은 비록 그것이 저명한 학자의 글이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내 논문을 구상하고 작성하는데 있어서 한가지의 資料에 지나지 아니하게 된다.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읽어보았는지도 의심스러운 서양 외국학자들의 저서들은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정작 국내 학자들의 문헌들을 인용하는 데에는 인색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그러한 경향은 국내문헌을 인용하는 것은 자기의 학자로서의 수준을 낮추어 보게 만들며 서양 외국학자의 문헌을 인용하여야 자기의 학자로서의 수준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행태의 반영일 수 있다. 둘째로 그러한 경향은 국내학계의 수준이 뻥한 만큼 국내문

7) 전제 Gibaldi, *MLA Handbook*, 26-29면; Wayne C. Booth, et al., *The Craft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166-170면 등.

헌을 인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국내문헌에 대하여는 알고도 하지 아니하고 혹은 공부를 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우선 외국의 문헌을 많이 인용하여 자기의 학자로서의 수준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속임수의 생각이지 자기가 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글이 그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자기의 논문은 인용된 외국의 문헌을 통하여 외국의 글과 생각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수준이고 자기의 논문이 독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학문의 성장이나 수준의 향상은 학자들의 글이나 생각의 교류 등 학자들간(academic circle)의 학문적 교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세계보편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자연과학에서와는 달리 局地性을 강하게 지니는 법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普遍性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적인 학문적 시장의 형성이 없는 일방통행적인 수입만으로 학문이 성장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법학의 경우에는 그러하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미국의 문헌만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미국의 법학을 일구어 내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여건으로 인하여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가 미국의 경우보다는 빈번하여도 기본적으로는 독일문헌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학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 법학이나 독일 법학의 문헌을 일방통행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우리에게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존재하는지 의심케 만든다. 미국의 법학자가 혹은 독일의 법학자가 우리 나라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여 학문을 하고 논문을 쓰면서 학문적 활동을 하였을 리 없는 까닭이다.

우리 나라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학문적 교류 없이는 우리 나라 사회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법학이나 사회과학은 없다. 이러한 학문적 교류는 한국학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자들도 고민하지 아니하는 우리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또는 독일의 학자들이 고민하여 줄 리가 없다. 우리의 문제를 푸는 우리의 학문을 위해서는 국내적인 학문적 교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국내문헌의 인용은 이러한 의미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내문헌의 인용에 인색한 것은 학문적 관심 결여의 표식이거나 공부를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증거에 지나지 아니한다.

### III.

이상에서 논문의 틀을 짜고(구성하고) 실제로 작성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인 원리·원칙들에 대한 생각을 내 스스로의 논문작성의 경험 및 대학원생 논문지도 및 심사의 경험과 필요성에 비추어 다루어 보았다. 물론 이것으로 완결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지침서가 없었던 데에 비추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여 마지않는다. 논문구성·작성의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내 논문의 중심이 되라는 것이다. 즉 내가 가지는 문제의식, 제기하는 쟁점(문제점),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한 나의 주장,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나의 논증이 내가 쓰는 논문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축에 따라 내 주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논증할 수 있게 논문의 틀을 짜야 하고 이 틀에 맞게 자료를 해석하고 내 논문의 주장을 증명하며 혹은 정당성의 근거를 갖추게 하여 요컨대 내 논문의 주장으로 하여금 논리적 설득력 내지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主題名을 논문의 주제명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章節의 編成도 이러한 목적 실현에 가장 적합하게 그 틀을 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구성·작성의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자료들, 예컨대 관련된 법조문, 판례, 논문 등 문헌자료, 관찰한 자료, 인터뷰자료, 통계자료 등, 우리의 상상력이 허용하는 만큼의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외국의 학설·이론이나 외국의 사례, 제도, 판례 등의 자료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외국의 저명학자의 학설이나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내 논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한 가지의 활용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나의 중심축을 잃고 외국등의 학설·판례의 틀에 끌려가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논문을 쓰려고 하는 우리 나라 대학원생들로부터 자주 듣는 호소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쓰려고 하는 주제는 새로운 것이어서(즉 새롭게 등장하게 된 쟁점을 다루게 된 까닭에) 기왕에 이를 다룬 글이 전혀 없는 까닭에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없어서” 쓰기 힘들다는 호소이다. 첫째로 이러한 주제야말로 자기의 학문적 창의력을 발휘하여 한번 다루어 볼 만한, 즉 도전해 볼 만한 주제임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남이 이미 그 주제를 다룬 논문이나 책이 있다면 자기가 다룰 만한 것이 없거나 비집고 들어갈 만한 부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자기가 관심있는 영역을 이미 다룬 다른 사람의 문헌이 있어야 비로소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란 학문적 상상력이 허용하는 만큼 다양하고 많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학문적 나태의 발로에 지나지 아니한다. 자료는 학문적 상상력이 허용하는 만큼 개발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법전, 판례, 실례, 관행, 경험담, 인터뷰, 관찰한 것 등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다른 사람의 저술은 그 많은 자료 가운데 오직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요리하여 자기 논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오로지 자기의 학자적 능력에 달린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법사회학의 경우에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다. 중심이 되는 것은 문제의식 — 쟁점의 제기 — 주장의 개발 — 논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제시하여 본 바와 같은 논문의 구성 및 작성의 방법을 배우는 방법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논문작성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지침서등)을 읽고 참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보다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뜯어읽는 방법이 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며 그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였는가를 살펴면서 읽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대학원생쯤 되면 남의 논문은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장하였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읽는 법이지 그곳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읽는 법이 아니다. 혹시 부수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는 수는 있어도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논증하려고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일인 것이다. 정보는 오히려 연감이나 통계연보나 백과사전이나 판례집 또는 법령집 등 자료집에서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는 것은 학부학생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리고 잘 쓴 논문은 무슨 주장을 어떻게 논증하였길래 이처럼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논문구성·작성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며, 잘못 쓴 논문은 하필이면 왜 이러한 주장을 하였을까, 그가 택한 방법으로 그 주장이 과연 논리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주장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다른 방법으로 논증하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를 가늠하면서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은 독일식 문헌인용방법을 따르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미국식 문헌인용방법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독일 문헌은 독일식으로 미국문헌은 미국식으로 인용하여야 하는 줄 알고 한 논문 안에서 독일 것은 독일식으로 미국 것은 미국식으로 인용하는 등 다양한 문헌인용방식을 혼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문헌인용 방식이야말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자들 사이(즉 academic circle)의 하나의 약속에 지나지 아니한다.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쓰는 논문이라면 우리 나라에서 보통으로 쓰이고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약속이 있는 문헌인용방식을 따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헌인용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책은 한국식으로 독일 책은 독일식으로 미국책은 미국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제일 큰 문헌인용방법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문헌인용방법상의 또 하나의 틀이 있다면 인용된 문헌에 관한 서지상의 정보(저자명, 논문제목, 그것이 실린 책의 경우에 그 책의 저자나 편집자

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그것이 실린 쪽수 등)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참고문헌목록은 실제로 자기가 읽고 도움을 받았거나 참고하는 등 활용한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저자명(姓)의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서지정보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

8) 이 글에 실린 필자의 footnotes 다는 방식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가 서울대학교 法學지에 실어서 편 논문들은 대체로 이러한 방식을 따른 것이다.

<Résumé>

**SOME THOUGHTS ON  
THE CONSTRUCTION OF RESEARCH PAPERS**  
—WITH PARTICULAR FOCUS ON  
LAW REVIEW ARTICLES, THESES AND DISSERTATIONS—

Dai-Kwon Choi\*

This paper is designed to give some guiding ideas on academic articles with law related topics including theses and dissertations to aspiring legal scholars. It is born out of the felt necessity to do so on the basis of the author's long scholarly experience with and observations on writing his own research articles and advising numerous graduate students for their theses and dissertations as an academic adviser and a dissertation committee member. The problems with graduate students writing their theses and dissertations which I have so often encountered are more or less patterned; they appear to commit much the same mistakes and show the common lack of disciplines about thesis writing.

The principal advice for construction of research paper is that one has to have a clear idea of what he is going to do with his paper and that this idea has to be the central theme to carry on through the paper. In order to do so, naturally one has to have a scholarly relevant issue raised out of his own intellectual curiosity and inquiry, to have his own answer to the issue and to justify his answer in rational, reasoned ways. What is said thus far is commonsensical among scholars and serious academic writers. The author noticed a number of the same pitfalls which aspiring scholars fall over and over again. Among others, many of them lack a focus, that is, they do not have a clear idea of what theme to carry through. Many others have mixed focuses as noticed particularly among those whose approach is that of social science to the law in the sense that both a legally relevant issue and a social science issue are frequently raised in the same writing. Many others often make a few digressions from the central theme in writing, which is no more than a distraction, however interesting topics it may involve.

After all, disciplined writing of such academic papers as theses and dissertations is integral part of scholarly training itself, without which one cannot render a writing into a scholarly paper.

---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